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 민병주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에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

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‘접도율’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·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‘6m 미만’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폭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이를 통해 기존에 접도율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도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,  
주택접도율이 40% 이하인 지역인 경우,  
현행 조례 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 
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 
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하겠다는 것입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